

	경 영 기 본	분류번호	KZA-0102
	이 사 회 규 정	시행일자	2024.12.23
		개정번호	10

0.1 목차

1. 목적 및 적용범위
2. 용어 정의
3. 책임 및 권한
4. 이사회 구성
5. 의장
6. 회의의 종류
7. 소집 및 의안부의신청
8. 소집절차
9. 결의방법
10. 부의사항 및 위임
11. 보고사항
12. 이사회 내 위원회
13. 감사위원회
1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5. <삭 제>
16. <삭 제>
17. 관계인의 출석
18.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19. 의사록
20. 간사
21. 기록
22. 첨부

0.2 관련규정

1. 정관 (KZA-0101)
2. 규정작성 및 관리규정 (KZB-0106)

규정명	이 사 회 규 정	분류번호	KZA - 0102	개정번호	10
-----	-----------	------	------------	------	----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규정은 이사회회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용어 정의

2.1 이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포함)

2.2 사외이사

주주총회에서 상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선임된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2.3 기타비상무이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중 사외이사를 제외한 자

2.4 <삭 제>

3. 책임 및 권한

3.1 이사회

-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
-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 이사회 평가 실시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주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그리고 이사회는 매년 이사의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기 연도의 이사회 보상에 활용할 수 있다.

3.2 의장

- 이사회 개최 결정
- 회의 주재
-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에 대한 결정

3.3 간사

규정명	이 사 회 규 정	분류번호	KZA - 0102	개정번호	10
-----	-----------	------	------------	------	----

- 이사회 소집청구서 검토 및 조정
- 이사회 소집통지
- 이사회 의사록 작성 유지
- <삭 제>

3.4 사외이사

- 사외이사는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사의 이사 전원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5. 의장

5.1 이사회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5.2 회장이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사장,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회의의 종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 개최한다.

- 정기이사회 : 년 4회
- 임시이사회 :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7. 소집 및 의안부의신청

7.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회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5.2 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2 각 이사는 의안과 사유를 밝힌 '의안부의신청서' <첨부1>를 제출하여 의안의 부의를 신청할 수 있다.

8. 소집절차

8.1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늦어도 그 1일전까지 각 이사에 대하여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이용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Email, 문자(SMS) 등 전자통신 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규정명	이 사 회 규 정	분류번호	KZA - 0102	개정번호	10
-----	-----------	------	------------	------	----

8.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개최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 통지서의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8.3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전 8.1항 및 8.2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9. 결의방법

9.1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출석이사 전원이 서로의 발언을 동시에 청취할 수 있는 전화 및 화상회의, 기타 유사한 통신장비를 이용하여서도 회의를 할 수 있다. 이때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9.2 <삭 제>

9.3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9.4 전 9.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부의사항 및 위임

10.1 이사회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2) 대표이사 직위 선정
- 3)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관한 승인
- 4)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
- 5) 타회사의 임원 겸임 승인

6) 채무에 관한 사항

6.1 신주의 발행

6.2 사채의 발행

6.3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에 따른 의무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6.4 위 사항 이외 자금조달, 여신약정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

위임전결 규정에 따름

7) 투자에 관한사항

규정명	이 사 회 규 정	분류번호	KZA - 0102	개정번호	10
-----	-----------	------	------------	------	----

7.1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에 따른 의무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타법인 출자 및 대여

7.2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에 따른 의무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유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7.3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공시기준 이상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시설투자, 시설(외)투자, 시설 증설, 별도 공장의 신설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 재결의
- 10) 회사경영의 기본방침과 정책
- 11)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10.2 이사회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이사회회의 결의로써 이사회 내 위원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10.3 본 규정이나 법령에 의하여 이사회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해진 외의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한다.

11. 보고사항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2) 이사회에서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3)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이사회 내 위원회

12.1 이사회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12.2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

규정명	이 사 회 규 정	분류번호	KZA - 0102	개정번호	10
-----	-----------	------	------------	------	----

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한다.

12.3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2.4 위원회에 대하여는 본 규정의 8.(소집절차), 9.(결의방법), 19.(의사록) 규정을 준용한다.

13. 감사위원회

13.1 감사위원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13.2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3.3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1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4.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14.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관계법령에 따라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14.3 기타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본 이사회규정을 준용한다.

15. <삭 제>

16. <삭 제>

17. 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8.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18.1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규정명	이 사 회 규 정	분류번호	KZA - 0102	개정번호	10
-----	-----------	------	------------	------	----

18.2 전 13.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9. 의사록

19.1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19.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9.3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20. 간사

20.1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20.2 간사는 이사회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임원 또는 팀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

21. 기록

본 규정 관련기록들은 `문서 및 기록 관리 규정`에 따라 기록으로 관리하며 다음과 같이 유지 보관한다.

기 록 명	보관기간	보관책임자
이사회 의사록	영구	<u>이사회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임원 또는 팀장</u>
이사회 소집 청구서	3	<u>이사회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임원 또는 팀장</u>
이사회 소집 통지서	3	<u>이사회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임원 또는 팀장</u>

22. 첨부

<첨부1> 이사회 소집 청구서 (KZA-0102-01) 1매

<첨부2> 이사회 소집 통지서 (KZA-0102-02) 1매

규정명	이 사 회 규 정	분류번호	KZA - 0102	개정번호	10
-----	-----------	------	------------	------	----

부 칙

1. 이 규정은 1974년 8월 1일부터 제정시행한다.
1. 이 규정은 1976년 1월 5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 이 규정은 1978년 2월 18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 이 규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 이 규정은 1992년 12월 1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 이 규정은 1999년 2월 15일 개정시행한다.
1. 이 규정은 2000년 3월 일 개정시행한다.
1. 이 규정은 2003년 4월 2일 개정시행한다.
1. 이 규정은 2008년 2월 29일 개정시행한다.
1. 이 규정은 2023년 11월 9일 개정시행한다.
1. 이 규정은 2024년 12월 23일 개정시행한다.